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7. 16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5명(이진환, 도하석, 김장관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7. 16.)

## 2. 제안이유

-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에서 제2조)
-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업무의 위탁,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(안 제6조에서 안 제7조)
-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, 제4조, 제5조

- 「에너지법」 제4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, 제4조, 제27조, 제27조의2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7. 4.~7. 14.)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,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, 업무의 위탁, 협력체계 구축,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주민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** 안 제4조제3호 삭제

**7. 심사결과:** 수정가결

**8. 수정내용:** 붙임 수정안과 같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 (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3. 에너지전환시설 유지·관리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4조 (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